

##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3.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9. 3. 30
- 다. 상 정 일 자 : '99. 3. 30 (제7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김 제 월
- 나. 개정사유
  -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의 지방세 증가산금 징수방법과 상이함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법과 일치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증가산금 부과기준을 1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 (안 제25조 3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 정 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조 ④항에 의하여 체납자에 부과하는 증가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을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임.
- 모법인 지방세법은 '88. 12. 26자로 개정된 내용이나 동 조례안을 '95. 6. 3 제정하면서 상기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치 않음으로써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소액 담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5조 (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다만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 그외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군수는 사업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증가산금" 이하 한다)을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신설)</p>	<p>제25조 (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②-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u>적용하지 아니한다.</u></p>